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971
----------	-------

발의연월일 : 2023. 8. 23.

발 의 자 : 박성준 · 최인호 · 신정훈
정일영 · 안규백 · 김민기
권칠승 · 허종식 · 이성만
이용빈 · 박 정 · 박찬대
윤관석 의원(13인)

제안이유

온라인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등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심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온라인플랫폼시장에는 적합하지 않아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

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 확장을 억제함과 아울러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공정경쟁 촉진과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선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온라인플랫폼시장”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플랫폼서비스가 거래되거나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들 간의 거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서비스,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서비스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 시장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연평균 매출액 1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함(안 제8조).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안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안 9조).

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보복조치행위, 탈법 행위를 금지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자.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18조).

차.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 취득, 영업 양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 제한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19조).

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2년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

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부당한 차별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내용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또는 거래질서 개선

등을 위한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안 제28조).

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부당한 차별 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탈법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 확장을 억제함과 아울러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여 선순환 산업 생태계의 구축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플랫폼”이란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플랫폼시장”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플랫폼서비스가 거래되거나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온라인플랫폼서비스”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들 간의 거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온라인 중개서비스

나. 온라인 검색서비스

다.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라. 동영상공유서비스

마. 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인(對人)통신서비스

바. 운영체제

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아. 그 밖에 이용자들 간 거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4. “온라인 중개서비스”란 이용자들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온라인 검색서비스”란 이용자로부터 키워드, 음성, 문장 등의 입력어로 검색 요청이 있으면 입력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란 자료 등의 게시, 채팅(chatting) 등을 통하여 정보나 활동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 간의 관계를 구축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7. “동영상공유서비스”란 이용자들이 게시하는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8. “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인(對人)통신서비스”란 공적으로 부여된 국가 또는 국제적인 번호체계와 연결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특정 이용자가 다른 특정 이용자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9. “운영체제”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본 기능을 제어하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software application)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11.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란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제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2.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받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말한다.
 13.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란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를 포함한다.
 14.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중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5. “최종이용자”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중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구조가 국가경제 및 산업의 지속가능성,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이하 “온라인플랫폼시장 공정경쟁 시책”이라 한다)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온라인플랫폼시장 공정경쟁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다른 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온라인플랫폼시장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제1절 시장조사 및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등

제6조(시장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시장에 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온라인플랫폼시장 전체의 규모, 성장률, 기업 현황, 동향 등 전반적 실태
2. 온라인플랫폼시장의 세부 업종별 구분
3. 온라인플랫폼시장의 세부 업종별 해당 기업의 각 매출규모, 시장점유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의 구분과 매출액 산정 방법에 따라 기업이 속한 시장의 전체 매출액 대비 그 기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점유율 순위
4. 온라인플랫폼시장의 세부 업종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의 시장지배력 분석
5. 제7조에 따른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시장진입 제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7.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경쟁 환경(온라인플랫폼시장에 진입하거나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퇴출된 기업 현황 및 그 각각의 원인 분석 등을 포함한다)
8. 온라인플랫폼서비스의 유형
9.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에 관한 이용자 인식
10. 그 밖에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공정경쟁 촉

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조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시장조사 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목적
3. 조사항목 및 그 내용
4. 조사대상
5. 조사 방법 및 절차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거래 실태, 영업 현황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 내용, 요구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조사를 종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1. 주요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2. 불완전 또는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어저 조사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 보고서에는 제13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2.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라는 사실

2. 이 법에 따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향후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때에 이 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재조사를 실시하고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여부에 관한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 이의 신청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의무)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2.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인 경우

3. 직전 사업연도 국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같다) 수가 월평균 1천만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및 공정시장가치, 월평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수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등

제9조(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일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
2.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관

문이 되는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운영할 것

3. 제2호의 온라인 중개서비스가 아니면 소비자에게 사업자의 접근이 제한된다고 인정되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지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것

②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가까운 미래에 예측되는 전망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발행주식의 시가총액 등 사업규모
2. 재화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중개서비스에 의존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수 및 최종이용자의 수
3.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요·공급 등 반대작용 간 상호 효용에 미치는 효과
4.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편익, 시장의 진입장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의 집적도.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 권한과 분석능력을 고려한다.
5.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재화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수단 또는 매개로 다른 온라인플랫폼을 선택하지 아니하게 하는 효과

6. 그 밖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해당 사업자가 갖는 특성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신청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이 해제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1. 그 지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지정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내려진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2년마다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일에 제1항에 따른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정 및 지정해제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목록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이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라 한다)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 중 온라인 중개서비스 목록은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위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가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면 종전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승계되며, 종전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

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제13조(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과도하거나 약탈적인 가격정책 시행 금지 의무
2.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대금 회수 또는 가격 할인 금지 의무
3.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시장점유율 등 시장 지배구조의 해소 또는 완화 방안 마련 의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의무
5. 그 밖에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제14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가 경쟁 온라인플랫폼에 접근하거나 경쟁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자신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신의 온라인플랫폼 상에서 거래하는 재화등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다른 유통경

로에서 적용하는 거래조건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행위

3.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자신 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거래하는 재화등을 다른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재화등보다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등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위
4.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다른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도록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간접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5.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부당하게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 또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와 결합하거나, 결합할 목적으로 최종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다른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하는 행위
6. 자신의 온라인플랫폼 설치에 연동하여 자동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이거나 온라인플랫폼서비스 기능수행에 필수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제3자가 단독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부당하게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의 조건이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부당한 차별 금지) 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노출 순위, 온라인 플랫폼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차별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복 조치의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의 불리한 변경, 온라인플랫폼서비스의 정지·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에 대한 협조
2.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17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및 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적용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 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최종이용자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요청·제공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동의 절차(이하 이 조에서 “동의절차”라 한다)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절차로 최종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최종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보다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의 대상 기업

2.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및 기업결합 대상 기업의 각 연간 매출 규모

3.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및 기업결합 대상 기업의 각 온라인플랫폼서비스별 연간 매출 규모

4.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및 기업결합 대상 기업의 각 온라인플랫폼서비스별 연간 및 월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수

5. 기업결합의 사유

③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해당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기업결합을 위한 해당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심사·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을 위반한 합병 또는 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업결합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한다.

제3장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 및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지원계획 수립 등

제20조(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 수립)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공정경쟁 촉진을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년마다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업종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지원계획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업종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및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업종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인력·경영·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세계화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혁신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업종별 특수성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업종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및 조사

제23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2.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한 경우

제24조(처분대상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30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끝난 날은 최후의 위반행위가 끝난 때로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제25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재발 방지
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6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25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14조,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또는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최종이용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항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과의 상호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철회하면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제29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명령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9조 및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공무원 또는 동의를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4.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제3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감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거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행위 또는 영업을 계속한 경우
4.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물건을 제출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장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른 시장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